#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90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박지원

민홍철 · 강준현 · 박홍배

임호선 · 김영호 · 강경숙

백혜련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, 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있음.

그러나,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 중 "7일"을 "30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, 음반·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각각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1	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
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	
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	
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	
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문화체육관	<u>30일</u>
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
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